TYM 협력사 실천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주식회사 티와이엠

I. 개요

1. 실천규범 목적

TYM은 협력사와 상생하며 동시에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최근 농기계 산업부문도 친환경,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 IoT기술의 확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전방위적 혁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TYM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전 협력사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TYM은 협력사가 본 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고 상호 동반 성장할 수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 실천규범 대상

TYM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3. 협력사 책임과 역할

TYM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실천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TYM 및 TYM의 위탁을 받은 제 3자기관은 협력사가 본 실천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법과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으며, 확인된 리스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하여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될 것입니다. 본 실천규범은 협력사의 의무이행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아니며, 강제조항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함으로 정기적으로 보완 및 개선될 수 있습니다.

Ⅱ. 윤리경영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방지

i.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 당한 대가를 의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ii.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청렴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해상충 방지

- i.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야 합니다.
- ii.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수단을 제안, 제공,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불공정거래 방지

- i.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ii. 협력사는 제·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 iii.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iv.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위조 및 사제 유통용 부품 방지

i.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ii.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TYM 혹 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iii.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 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정보보호

- i.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ii.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공유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침해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iii.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수집·이용해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자재구매 책임

- i.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분쟁광물: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 ii.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 재료의 채굴과 가공과정에서 인권침해, 윤리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Ⅲ. 환경경영부문

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i.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법률, 규제를 준수

해야하며, 필요 시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ii. 협력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표준 등)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i.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 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3. 수자원 관리

- i.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대기오염물질 관리

- i.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

- i.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

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ii.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6. 화학물질 관리

- i. 협력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 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MSDS)
- ii.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노력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 등)

IV. 안전/보건 부문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i.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국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2.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i. 협력사는 사업장내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 ii.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요원 등을 설치, 배치하고 관리 해야 합니다.

iii.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3. 비상상황 대응

- i.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ii.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 작동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고 관리

- i. 협력사는 사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iii.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 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안전진단

- i. 협력사는 사고위험 또는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간의 안전·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공개하며 결과에 따라 기계, 기구,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안전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공간의 사고위험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직원이 쉽게 이해 및접근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iii.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해외근로자 등 사회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V. 경영시스템 부문

1. 기업성명서 공시 권장

i.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할 것을 권장합니다.

2. 담당자 선임

i.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선임 및 활동
계획 수립, 이행사항을 감독할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리스크 점검

i.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원, 안전보건 분야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소통

i.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 등을 임직원에게 교육 및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5. 정보 관리

- i.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고충처리제도 운영

i.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합 니다.

ii.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7.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i.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 보건 내용을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8. 규범 준수

- i. 협력사는 TYM 또는 TYM이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현장점검 시 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의 준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 관리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운영의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문서

-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25조)
- 산업재해 및 질병 발생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10조)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93조)
- 적정한 임금액 (근로기준법 48조)
- 윤리헌장 준수 동의서
- 비상상황 매뉴얼
- 근로시간 기록 일지 등
- iii.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 점검 혹은 현장방 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개선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VI. 노동인권 부문

1. 차별 금지

- i. 협력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등의 대우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ii.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iii.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임금 및 복리후생의 제공

- i. 협력사는 법률, 제도를 준수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임<mark>직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mark> 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iii. 협력사는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의 관리

- i. 협력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 을 관리해야 합니다.
- ii.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iii.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인도적 대우

- i.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 시간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 제해야 합니다.
- ii.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iii.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가해자 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하여야 합니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 i.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 ii. 임직원의 대표자와 <mark>단체교섭</mark>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 iii. 임직원의 대표<mark>자</mark> 부재 시 개별 <mark>임직원이</mark>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제 안하도록 합니다.

6. 아동노동 금지

- i.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ii.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고강도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iii.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한하는 거래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

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강제노동 금지

- i. 협력사는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 ii.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iii.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